

#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9. 12. 24.  
교육사회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9년 12월 7일
- 회부일자 : 2009년 12월 9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2009. 12. 17, 제28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  
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·토론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 : 이장길 기획관리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교원의 정보화 연수, 교육정보 자료의 개발과 활용 지원, 이러닝 지원 체제의 구축·운영, 행정 정보 전산화의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정보원을 설립하며,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의 교육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청주지역에 설치하고자 함

## 나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의 일부를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556-4번지에 둠(안 제23조제2항)
- 본청 직속기관으로 "충청북도교육정보원"를 둠(제9절)
  - (1) 충청북도교육정보원을 신설함(안 제31조의1)
  - (2) 충청북도교육정보원에 원장을 두며,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함(안제31조의2)
  - (3) 충청북도교육정보원장의 사무를 분장함(안 제31조의3)

## 3. 검토보고 요지

(교육사회전문위원 윤양한)

###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

-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의 일부기능을 청주지역에 이전·설치를 위한 단서조항 신설(안 제23조제2항)
  - 청주시 인근에는 영어학습체험 기관이 없어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의 일부기능을 구 청주교육청 건물로 이전·설치하기 위해 단서조항 신설하려는 것임.
-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의 신설에 따라 관련 조항 신설(안 제31조1 ~제31조3)
  - 종합적인 교육정보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「충청북도교육정보원」 신설에 따라 설치 목적과 위치 및 원장의 업무를 규정한 것임.

□ 따라서,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교육행정 정보 전산화의 진흥을 위한 “충청북도교육정보원”설립과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의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그 일부를 청주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「교육기본법」 제23조(교육기관 설치)에 근거하여 신설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며 조에 가지번호를 붙이는 가지개정방식을 사용한 바, 조례 개정형식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1부.

## 충청북도 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외국어교육원의 일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556-4번지에 둔다.

제3장에 제9절(제31조의1, 제31조의2, 제31조의3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 제9절 충청북도교육정보원

제31조의1(설치)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정보화 연수, 교육정보 자료의 개발과 활용 지원, 이러닝 지원 체제의 구축·운영 및 행정 정보 전산화의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정보원(이하 “교육정보원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교육정보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4-3번지에 둔다.

제31조의2(원장) 교육정보원에 원장을 두며,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31조의3(업무)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교육용 콘텐츠 개발·보급에 관한 사항
2. 정보화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
3. 정보관련 연수 및 정보 활용 능력 신장에 관한 사항
4. 교육정보 종합 서비스에 관한 사항
5. 교육망 및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관리
6. 그 밖에 교육정보화에 관련된 업무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장 제9절(제31조의1부터 제31조의3까지)의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관계법령 발취

□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[전부개정 2006.12.20 법률 제8069호]

**제32조 (교육기관의 설치)**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